		보 도 자 료	(배포) 2020.3.26.(목) 10:00
3월 26일(목) 16:00 이후 사용			
비고	# 공동배포 : 농림축산식품부		
담당	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사회공공2과	과장 진재훈, 감사관 황영규 (02-3703-2054, 2053)	
	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	과장 김수일, 사무관 김혜을 (044-201-2251, 2254)	

「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」 운영 실태 점검 결과

- 사업자 평가시스템 보완, 공사감리기준 구체화 등 운영상 미비점 제도개선 추진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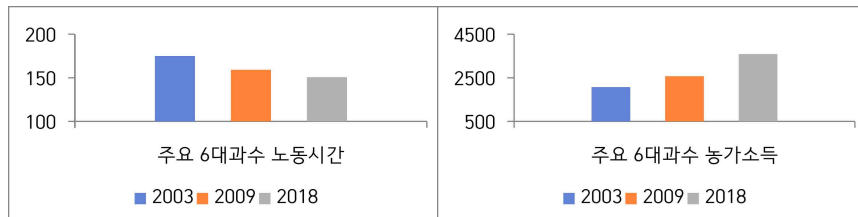
□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(단장: 최병환 국무1차장)은 농림축산식품부(장관: 김현수)와 함께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('19. 10. 21. ~ 11. 15.)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

○ 정부의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한·칠레 FTA 체결 이후, 2004년부터 과수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해오고 있으며,

- 지원예산 규모 : ('17) 1,251억원 → ('18) 1,379억원 → ('19) 1,504억원
- 과수농가 수('18) : 173,085가구(전체 농가 1,020,838가구의 17%)

○ 2003년 대비 사업성과는 주요 6대과수*(300평 기준)의 노동시간은 14%(25시간) 감소하고, 농가소득은 71%(133만원) 증가했습니다.

* 주요 6대 과수 : 포도, 배, 복숭아, 사과, 감귤, 단감



※ 2018년 농산물표준소득자료(농촌진흥청)

□ 이번 점검은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목적으로,

○ 최근 5년간, 5천만원 이상 보조금 지원사업 94개를 선정하여 사업자 선정, 사업 집행, 사후관리 분야를 점검하였습니다.

□ 점검결과, 부정수급·횡령과 같은 중대한 위반은 없었으나 분야별로 운영 절차상 미흡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.

○ 주요 적발사례로는 사업자 선정절차에서 사업계획 미공고, 공고기간 미준수, 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생략,

○ 사업 집행에서 공개경쟁대상 사업의 수의계약 체결, 공사감리 미실시, 사업계획 임의 변경, 보조금 정산검사 미흡,

○ 사후관리에서 출하약정 미준수, 자체점검 및 사후평가 미실시 등이 있었습니다.

□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 나타난 위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, 본 사업이 보다 공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.

○ 첫째, 보조사업자 선정절차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

- 시·군의 사업계획 공고 및 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를 시·도에서 반드시 확인토록 절차를 보완하겠습니다.

- 우선지원 경영업체 여부, 동일필지 중복지원 여부, 타 보조금 지원 내역 등 내부평가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겠습니다.

- 둘째, 보조사업 집행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
 - 공사감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**감리 범위 및 방법**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.
 - 정확한 정산검사를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**증빙자료**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.
 - 셋째,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책임성이 확보되도록
 - 출하약정에 대한 객관적 세부기준을 마련하고, **의도적으로 출하 약정을 미준수**한 경우에는 향후 동 사업의 **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**토록 하겠습니다.
 - **자체점검표**와 **중간(사후)평가표**를 마련하여 사업주관기관(시·군)의 정확한 점검 및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.
-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계속 점검하고, 관리·감독을 철저히 하여 **보조사업이 공정하고 효과적으로**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.

※(붙임) 1.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개요
 2.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
 3. 제도 개선방안

붙임 1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개요

□ 사업개요

- 목적 : 외국산 과일과 품질경쟁이 가능하도록 과수농가의 생산 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**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 확보와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반 구축**
- 지원내용 및 대상
 - 지원내용 : **고품질생산**(우량품종갱신, 지주시설, 비가림시설 등), **생산비·에너지 절감시설 및 장비, 재해예방** 등
 - * 직접투입재(비료, 농약 등), 농기계, 소모성 장비, 난방시설(포도, 감귤) 등은 지원 제외
 - 지원대상 : 지역 과수산업발전계획 참여 및 출하약정 농가
- 지원조건 : **국비 20%, 지방비 30, 용자 30, 자부담 20**
 - * 용자조건 : 연리 고정 2.0%(변동: 시중금리-2.0%),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
- 사업시행주체 : **시·도지사(시장·군수)**

□ 연도별 예산투입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
합 계	129,391	125,124	137,885	150,356
국 고	30,534	30,515	27,577	30,071
지방비	45,802	45,773	41,365	45,107
용 자	22,521	18,321	18,321	15,360
자부담	30,534	30,515	50,622	59,818

□ 특이사항

- 신규 진입 제한 등을 위해 **한·미 FTA 발효일을 기준 2012. 3. 15. 이전** 조성된 과원에 한정 지원
 - 참여조직(농협, 농업법인)에 **최근 5년 이내 출하실적이 있고, 3년 이상 출하약정**한 농가에 한정 지원

붙임 2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

구분	유형	적발사례 및 조치사항
사업자 선정절차 부정적 (80건)	사업계획 미공고, 공고기간 미준수 (58건)	- 공고를 생략하고 참여조직(농협)에 공문만 시달하거나, 공고기간 (30일)을 축소하여 공고 ⇒ (주의) 사업계획 공고절차 준수 철저
	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생략 (22건)	- 보조사업자 선정 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하나, 충분한 예산확보 등의 이유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내부에서 결정 ⇒ (주의) 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절차 준수 철저
사업 집행 부정적 (147건)	공개경쟁대상 사업 수익계약 체결 (43건)	- 비가림하우스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재구입비용을 분리하여 수익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 ⇒ (주의) 향후 보조사업 계약절차 준수토록 조치
	공사 품질 관리 미흡 (26건)	- 표준시방서 규격 외 시공(비가림시설 주기둥, 하우스 폭 변경 등) 시 내재해 기준 충족 여부 심사 생략 ⇒ (주의) 공사감리 및 내재해 기준 충족 여부 심사 철저
	사업계획 변경절차 생략 (26건)	- 승인 없이 비가림하우스 사업량을 변경(5,000→7,221㎡)하거나, 부가세 환급금을 재투자하여 사업 추진 ⇒ (주의) 향후 사업계획 변경절차 준수토록 조치
	정산 절차 미흡 (43건)	- 자기부담금 우선집행 미준수, 사업용 별도계좌 타 용도로 중복 사용 - 친환경과원관리사업 정산 시 세부 정산 증빙자료 미비 ⇒ (주의, 시정) 자기부담금 및 별도계좌 관리 철저, 증빙자료 보완
	친환경과원관리 필수사업 미실시 (9건)	- 친환경과원관리의 필수사업으로 되어 있는 「병해충예찰용역」 또는 「컨설팅용역」을 제외하고 사업 추진 ⇒ (주의) 친환경과원관리 필수사업 실시 철저
사후관리 부정적 및 기타 (159건)	출하약정 미준수 (36건)	- 당초 면적 대비 생산예상량이 과도하게 산정되었거나, 생산량 감소 등의 이유로 약정 미준수 ⇒ (주의) 출하약정서 제10조에 따른 불이행 제재
	분기별 1회 이상 자체점검 미실시 (56건)	- 사군에서는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나, 미실시 ⇒ (주의) 분기별 자체점검 실시 철저
	중간평가 미실시 (26건)	- 사업착수 후 3~6월 중에 전문가 협의체,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하여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, 미실시 ⇒ (주의) 중간평가 실시 철저
	사후평가 미실시 (41건)	- 사업종료 후 3월 이내에도 사업목적 달성 여부, 사업효과 분석,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, 미실시 ⇒ (주의) 사후평가 실시 철저

붙임 3 제도 개선방안

1 사업자 선정 투명성 강화

구 분	현 행	개 선
① 공고 및 선정위원회 개최 여부 확인절차 마련	공고 생략, 선정위원회 심의 없이 대상자 선정으로 공정성 문제 발생	사업대상자 선정 현황 보고 시 공고 및 심의 개최 결과를 반드시 첨부하고, 확인토록 개선
② 사업자 내부평가 시스템 구축	우선지원 경영체, 중복 지원 확인, 타 보조금 지원 내역 등 주요 평가자료를 수작업으로 관리	사업대상자 평가자료가 시스템적으로 관리·확인되도록 농림사업정보 시스템에 기능 구축
③ 출하약정 평가기준 마련	필수 요건인 출하약정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 미비로 형식적 운영	과수별 객관적 출하량 평가를 위한 출하약정 세부기준 마련

2 사업 집행 관리 강화

구 분	현 행	개 선
① 계약방법 사전안내 및 확인절차 마련	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방법 위반 사례 발생	사업계획공고, 사업자선정 안내 시 계약방법을 명시하고, 업체선정 전 확인을 거치도록 지침 개정
② 공사감리 범위 등 세부기준 구체화	공사감리 범위 등 세부내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, 감리를 실시하지 않거나 형식적 감리보고서 제출	엄격한 감리,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해 공사감리 범위 및 방법 등 세부기준 마련
③ 정산검사 증빙서류 등 세부기준 구체화	보조금 정산서류가 지자체별로 상이하고, 증빙서류가 미비함에도 정산보고서 인정 사례 발생	정산검사 시 필요한 증빙자료와 확인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
④ 친환경과원관리 (예찰·컨설팅 용역) 세부집행기준 마련	예찰과 컨설팅 용역의 사업범위, 예찰요원 자격, 활동기간 및 지급단가 등 집행기준 미비	예찰과 컨설팅 사업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세부집행기준 마련

3 사후관리 강화

구 분	현 행	개 선
① 출하약정 관리시스템 구축	출하약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적 확인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	참여조직(농협)의 출하량 정보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연계 되도록 개선
② 자체점검 및 평가 방법 표준화	사업추진 상황 자체점검, 중간 평가, 사후평가 미이행	자체점검을 분기별 1회 → 반기 1회로 완화하고, 점검표(평가표) 마련